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미국 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미국 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미국 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

4. 판 매 회 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2 년 10 월 23 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2 년 10 월 31 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미국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90% 수준(±10% 범위내)을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전략</th></tr>
<tr><td>하나 UBS 미국 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90% 수준</td><td>■ 투자전략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Fund - US Opportunity”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table>
<tr><th colspan="2">펀드 개요</th></tr>
<tr><td>집합투자기구명</td><td>UBS (Lux) Equity Fund - US Opportunity</td></tr>
<tr><td>설정일</td><td>2000년 2월 25일</td></tr>
<tr><td>순자산</td><td>약 580억원(2011년 2말 기준)</td></tr>
</table>
■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td></tr>
</table>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합니다.

※ 모신탁에의 투자비율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편입비율 조정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투자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2) 비교지수 : MSCI USA 95% + call 5%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미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UBS (Lux) Equity Fund - US Opportunity 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USA Index 95% + call 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피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이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와같은 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USD)에 대하여 환헷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헷지에도 불구하고, Rollover, NAV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

	표 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헷지 시행 수준 등으로 인하여 환율 변동 관련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사건,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속한 유통국가의 경제적인 제반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권 등 채무증권은,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이 제약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하나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손익과 연동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청산시 본 투자신탁 또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으며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나, 혼합형 투자기구 등 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미국시장의 변화와 미국주식등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2.10.25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안지영	1977	차장	21 개	695 억	-연세대 영어영문학/불어불문학 -KAIST 금융 MBA -한국씨티은행 WM 본부 투자상품부 -KB 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현)하나 UBS 자산운용 상품개발 및 운용 -유관경력 6.5 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6.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F, 종류 C-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주)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집합투자업자보수	0.20%	0.20%	0.20%	0.20%	0.20%	0.20%	0.20%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70%	1.5%	1.25%	0.95%	0.90%	0.90%	0.03%	
신탁업자보수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기타비용주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주2)	0.968%	1.768%	1.518%	1.218%	1.168%	1.168%	0.298%	
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 주4)	1.968%	2.768%	2.518%	2.218%	2.168%	2.168%	1.298%	
증권거래비용주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199,207	412,750	648,181	1,347,814
종류 C1	181,196	482,173	766,247	1,610,433
종류 C-E	119,704	377,368	661,442	1,505,627
종류 C-F	1,845	5,816	10,193	23,203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1) 종류 A 수익증권과 종류 C1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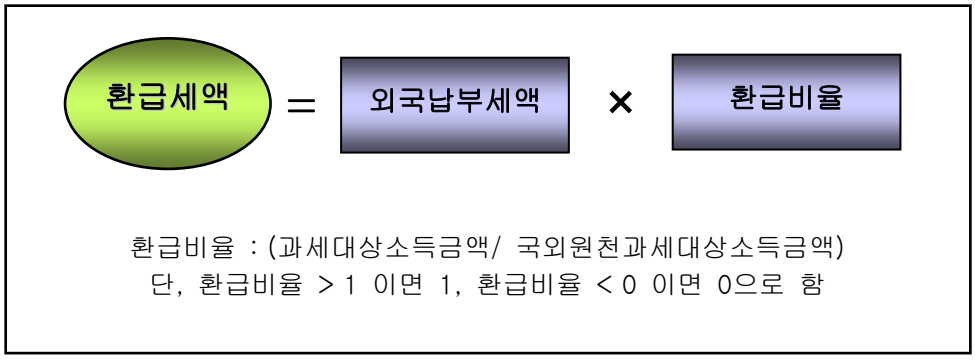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China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China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C-F	기관 및 법인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u>오후 5시 이전</u>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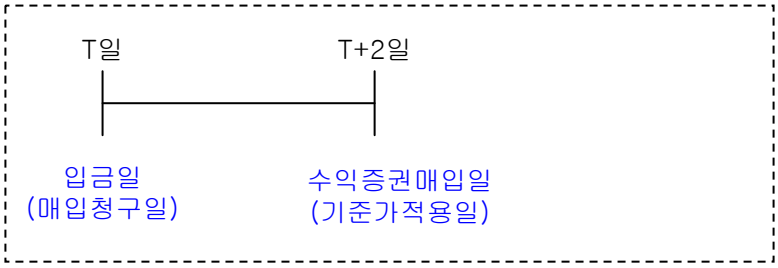

-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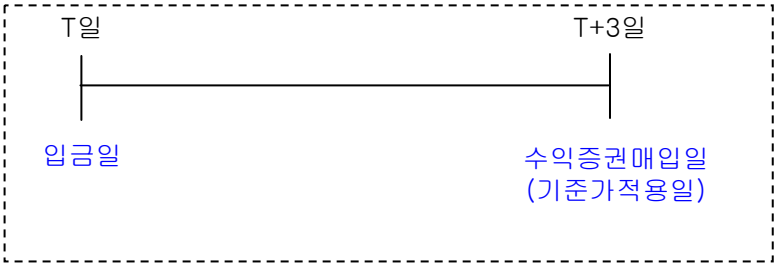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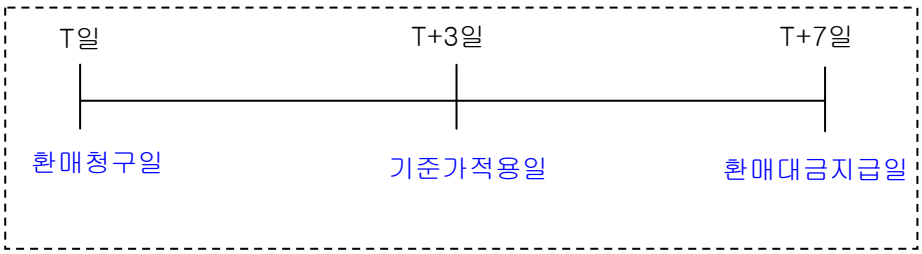

-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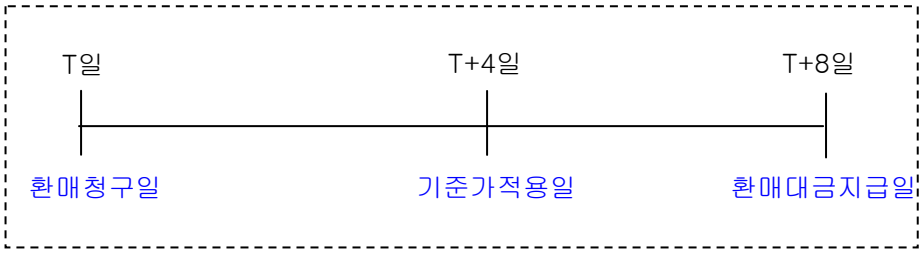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